

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의 학문적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권의 확보와 전문학술도서의 적정한 구입 및 배분을 위한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의 구성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무)

-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법학전문대학원장(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대학원장은 회의운영 시 위원장을 맡으며,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법학전문도서관 운영과장으로 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고,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한다.

제3조 (업무범위)

본 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학전문도서관의 연구 및 교육용 학술서적 구입자문
2.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공유의 효율적 방안 강구
3. 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위한 연구
4.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독자적인 서버관리
5. 기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 (회의)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1인 이상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 (임기)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보칙)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